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 **전문가 기고**
EU 옴니버스1 채택과 시사점

• **ESG 주요 현안**
EU-CSDDD Omnibus I 이후,
위험기반 ESG와
공급망 거버넌스의 재편
CSDDD가 다시 정의한 공급망 실사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ESG 통계 지표**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2026
MAY

EU 옴니버스1 채택과 시사점

송시현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파트너변호사

2026. 2. 24. EU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Omnibus 1 Simplification Package(이하 '옴니버스1')를 공식 채택하였고, 2026. 2. 26.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옴니버스1은 관보게재 20일 후인 2026. 3. 18.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옴니버스1은 간소화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CSDDD의 주요 내용

- 개정 CSDDD에서 가장 주요한 개정 내용은 적용 대상 기업이 대폭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개정 CSDDD 적용 대상 (EU 기업)은 직원 5000명 초과이면서 연매출 15억유로(약 2조5000억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역내 EU 기업과 EU 내 매출이 15억유로를 넘는 역외 비EU 기업입니다. 참고로 본래 2024. 3. 15. EU 이사회가 승인한 CSDDD의 경우 평균 임직원 수가 1000명 초과, 전 세계 순 매출이 4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 EU회원국들은 2028. 7. 26.까지 국내법화를 해야 하며, 2029. 7. 26. 모든 대상 기업에 전면 적용됩니다.
- 기업이 이행 중인 실사 조치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주기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변화가 있을 경우 수시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 EU 차원의 통합된 민사책임 체계는 삭제되었고, 각 회원국 법체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액 기준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CSDDD (2024)	개정 CSDDD (Omnibus I, 2026)
적용 대상 (EU 역내 기업)	직원 1,000명 초과 & 전 세계 순매출 €4.5억 초과	직원 5,000명 초과 & 전 세계 순매출 €15억 초과
적용 대상 (비EU 기업)	EU 내 순매출 €3억 초과 (단계적 확대)	EU 내 순매출 €15억 초과 (직원 수 요건 없음)
모니터링 주기	매년 1회	최소 5년 주기 (중대 위험 발생 시 수시 재평가)
민사책임	EU 차원 통합 민사책임 체계 적용	EU 차원 민사책임 체계 삭제 → 각 회원국 법체계에 위임
과징금	전 세계 매출액 최대 3%	전 세계 매출액 최대 3% (유지)

EU 옴니버스1 채택과 시사점

2. 개정 CSRD의 주요 내용

- 개정 CSRD 역시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기존 CSRD 적용 대상은 EU기업의 경우 직원 250인 이상의 대형 기업, EU 내 순매출 1.5억 유로를 초과하고 EU 대형 자회사나 지점인 비 EU기업, 상장 중소기업 등이었으나, 개정 CSRD에서는 직원 1,000명이 초과되고 순매출이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EU기업, EU 내 순매출이 4.5억 유로를 2년 연속 초과하고 EU자회사 또는 지점이 각 순매출 2억 유로를 초과하는 비EU기업이 되었습니다. 상장 중소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회원국 CSRD 국내법 전환 의무 기한은 2027. 3. 19.입니다.
- 참고로 EC는 옴니버스1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간소화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를 위임법령으로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2026. 9. 18.까지 채택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U집행위원회는 2026. 5. 6. ESRS 개정 위임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6월 3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공시 데이터 축소 (의무 데이터 포인트 61% 축소 등), 공급망 및 금융권 부담 완화, ESG 공시의 핵심 원칙인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체계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CSRD (2022)	개정 CSRD (Omnibus I, 2026)
적용 대상 (EU 기업)	직원 250인 이상 대형 기업 (매출·자산 등 2개 기준 충족)	직원 1,000명 초과 & 순매출 €4.5억 초과 (두 요건 동시 충족)
적용 대상 (비EU 기업)	EU 내 순매출 €1.5억 초과 + EU 대형 자회사·지점 보유	EU 내 순매출 €4.5억 초과 (2년 연속) & EU 자회사·지점 순매출 €2억 초과
상장 중소기업	2026년부터 단계적 의무 적용	의무 대상 제외 → 자발적 보고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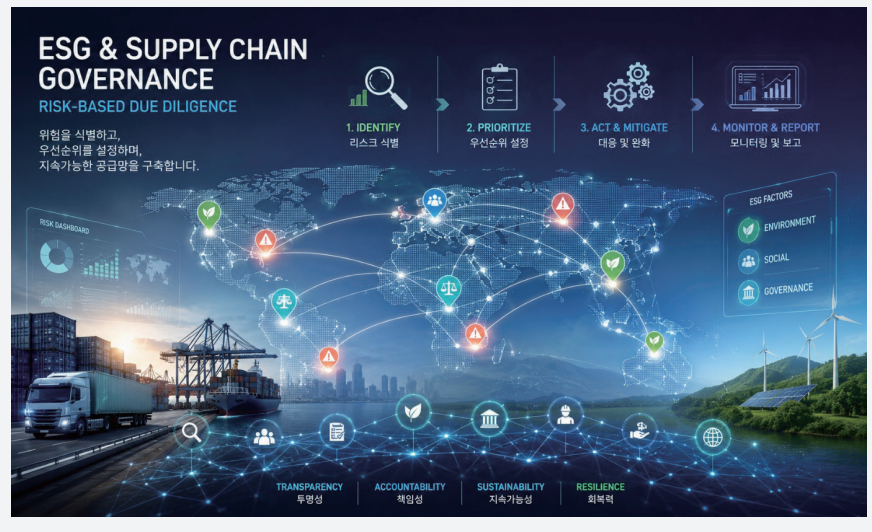
3. 시사점

- 위와 같은 옴니버스1 기준에 따라 적용 기업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 합니다. 다국적기업 연구센터(SOMO)가 2026년 개정 EU의 옴니버스1 기준에 따라 정비한 'CSDDD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실제 법안의 적용대상이 극소수의 초대형 기업에 게 집중되어 있고, 같은 그룹 안에 여러 법인이 중복 포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CSDDD의 직접 적용 대상이 상당히 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SOMO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국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기아·LG화학·LG전자·삼성전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¹⁾
- 다만, SOMO의 데이터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원수와 매출액 기준 등을 검토하여 옴니버스1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향후 EU 회원국들이 어떤 내용으로 국내법화를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국내법 내용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IMPACT ON 2026. 4. 16.자 기사, CSDDD 적용 기업 첫 공개...삼성전자·현대차 등 한국 기업 7곳 '직접 규제권'

EU-CSDDD Omnibus I 이후, 위험기반 ESG와 공급망 거버넌스의 재편

CSDDD가 다시
정의한 공급망 실사



1. 들어가며

EU ESG 규제는 지금 '현실 조정' 국면에 있다. 2024년 EU가 채택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강력한 제도로 평가되었다. 초기 CSDDD는 단순한 ESG 공시 수준을 넘어,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발생하였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 대규모 ESG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한 행정부담과 중복 자료 요청 문제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EU는 2026년 3월 18일 발효된 Omnibus I 지침(Directive (EU) 2026/470)을 통해 CSDDD와 CSRD 체계를 상당 부분 조정하였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번 개정이 ESG 정책의 철회라기보다 '실행 가능한 구조로의 현실 조정(realignment)'에 가깝다는 점이다. 특히 Omnibus I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얼마나 많은 공급망 정보를 수집했는가" 보다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우선순위화하고 관리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2. CSRD와 CSDDD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국 기업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는 CSRD와 CSDDD의 관계이다. 많은 기업들이 CSRD는 '공시 규제', CSDDD는 '공급망 실사 규제' 정도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로 두 제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는 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핵심 특징은 'ESG 데이터를 재무정보 수준으로 체계화', '공급망 데이터 포함',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적용', 'Double Materiality(이중 중대성) 개념 도입' 등이다. 즉, CSRD는 '기업이 ESG 위험과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EU-CSDDD Omnibus I 이후, 위험기반 ESG와 공급망 거버넌스의 재편

CSDDD가 다시
정의한 공급망 실사

하도록 요구한다. CSDDD는 '실제로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이다. 반면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 '노동 문제', '환경 훼손' 등을 실제로 식별·예방·완화할 의무를 부과한다. 즉, CSRD는 공시(disclosure), CSDDD는 '행동(action)'에 더 가깝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두 제도가 결합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OEM 기업은 CSRD 측면에서 '공급망 탄소배출', '인권리스크', '산업안전리스크'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식별했는지', '어떤 공급망을 우선 조사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CSDDD와 연결된다. 즉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CSRD= ESG 정보를 공개하는 체계', 'CSDDD= ESG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로 결합된다.

3. 초기 CSDDD가 만든 현실적 문제

— '실사 산업'의 폭증

초기 CSDDD는 공급망 전체(value chain)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 구조를 전제로 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대규모 ESG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SAQ(Self-Assessment Questionnaire)', '공급망 탄소 데이터', '노동·인권 자료', 'ESG 인증 자료' 요구가 급증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공급망 아래 단계로 반복 전가되었다는 점이다. 즉, EU 규제 유럽 대기업 글로벌 OEM 한국 대기업 중견·중소 협력사의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동일한 정보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U는 이러한 현상을 "trickle-down effect" 즉, "낙수효과"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4. Omnibus I 제안의 핵심 변경사항

— '범위 축소'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의 변화'

국내에서는 Omnibus I의 변화가 주로 '적용 대상 축소', '시행 연기' 중심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급망 실사의 '방법론' 변화가 훨씬 중요하다. 핵심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 (1) 초기 CSDDD에서는 종업원 1,000명 이상, 매출 €4.5억 이상이었다. Omnibus I 이후에는 종업원 5,000명 이상, 매출 €15억 이상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즉 규제 대상이 초대형 기업 중심으로 좁혀졌다.
- (2) 초기에는 2027년 단계 적용이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회원국 입법 반영이 2027~2028년, 본격 적용이 2029년으로 늦춰졌다.
- (3) 위험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 강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 ESG 실무는 가능한 많은 공급망 데이터를 수집하려 했다. 그러나 Omnibus I 이후에는 '모든 공급망을 동일 강도로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식별(scoping)', '우선순위(prioritisation)', '심층평가(deep assessment)' 중심으로 구조가 이동하고 있다.

EU-CSDDD Omnibus I 이후, 위험기반 ESG와 공급망 거버넌스의 재편

CSDDD가 다시
정의한 공급망 실사



(4) Omnibus I 은 정보 요청이 Necessary, reasonable, proportionate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미 보유하거나 공개 자료를 통해 확보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도록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즉, 무차별적 체크리스트와 반복적 SAQ 요구를 줄이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5) 우선순위(prioritisation)의 법적 의미를 강화했다. 기업은 모든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심각성(severity), 발생가능성(likelihood)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업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했다면, 덜 중요한 리스크를 즉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즉 앞으로 감독당국은 '얼마나 많은 공급망을 조사했는가' 보다 '왜 그 리스크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판단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

5. 그러나 위험기반 실사는 “면책”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험기반 실사는 '모든 공급망을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위험을 외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Omnibus I 이후에는 기업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위험을 무시할 경우 더 큰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6. 공개자료와 고충처리의 중요성 확대

Omnibus I 이후 CSDDD는 기업이 'ILO 보고서', 'UN 자료', 'NGO 보고서', '산업 리스크 정보', '언론 보도', '내부 고충처리 정보' 같은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고충처리(grievance mechanism)의 중요성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즉, '노동자 신고', 'NGO 제보', '내부 신고', '산업재해 관련 정보' 등을 기업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리스크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위험기반 실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 ESG의 중심이 '수집'에서 '판단'으로 이동

이번 변화의 핵심은 ESG의 중심이 '단순 데이터 수집'에서 '위험 판단과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협력사를 조사했는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는가'가 중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왜 특정 공급망을 고 위험으로 보았는가', '왜 특정 위험을 우선순위로 판단했는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ESG는 점점 Document Collection → Risk Governance → Explainable Due Diligence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EU-CSDDD Omnibus I 이후, 위험기반 ESG와 공급망 거버넌스의 재편

CSDDD가 다시 정의한 공급망 실사



8.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모두의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Omnibus I 이후의 CSDDD는 단순히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공급망 실사의 초점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했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하고 설명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급망 내 위치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공급망을 관리·통제하는 기업을 ‘주도기업 (lead company)’, 공급망 내 납품·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을 ‘협력업체(suppliers/business partners)’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1) 주도기업(Lead Company)에 대한 시사점

‘많이 요구하는 기업’보다 ‘정확히 판단하는 기업’이 중요해진다. 초기 ESG 대응 단계에서 많은 대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대규모 ESG 설문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Omnibus I 이후에는 이러한 ‘일괄적·반복적 정보요구’ 방식이 점차 정당화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EU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와 행정 부담 전가, 즉 ‘trickle-down effect’ 문제를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도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설문을 보냈는가’가 아니라, ‘왜 특정 공급망을 고위험으로 판단했는가’, ‘왜 특정 협력업체를 우선 평가했는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심층평가를 수행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앞으로 주도기업에게 필요한 역량은 ‘Risk Mapping 체계 구축’, ‘산업별 리스크’, ‘국가별 리스크’, ‘공급망 구조 분석’, ‘공개 리스크 정보 활용’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선순위(prioritisation)를 severity(심각성)와 likelihood(발생 가능성) 기준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고, 설문 중심 ESG로부터 벗어나고 ‘심층 인터뷰’, ‘현장 기반 검증’, ‘grievance(고충) 분석’, ‘공개자료 기반 위험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감독당국과 법원은 기업

EU-CSDDD Omnibus I 이후, 위험기반 ESG와 공급망 거버넌스의 재편

CSDDD가 다시
정의한 공급망 실사



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Explainability(설명 가능성)'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어떤 위험을 우선순위로 두었는지', '왜 특정 공급망을 심층평가 했는지'를 설명 가능한 형태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협력업체(Suppliers / Business Partners)에 대한 시사점

'자료 제출 기업'이 아니라 '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해진다. 많은 중소·중견 협력 업체들은 그동안 ESG를 '고객사의 설문 대응', '인증서 제출', '체크리스트 작성' 수준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Omnibus I 이후에는 협력업체 역시 단순 자료 제출을 넘어, 자신들의 공급망 위험을 스스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협력업체에게 중요한 역량은 '자사 리스크에 대한 기본 이해' 즉, '외국인 노동', '산업 안전', '화학물질 관리', '장시간 노동', '하위 외주관리' 등 자사 사업 특성상 어떤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Risk Mapping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개자료와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점검해야 하며, 자신들이 어떤 외부 리스크 환경 안에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충처리(grievance) 체계 중요성'이 확대되며, 향후에는 '노동자 신고', '익명 제보', '산업재해 정보' 등이 공급망 실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순 문서보다 실제 운영되는 내부 신고·고충처리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설명 가능한 운영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데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어떤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ESG 대응이 점차 '문서 제출 → 운영체계 설명 → 리스크관리 입증'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9. 맺음말

— Omnibus I 이후 공급망 실사의 새로운 기준

Omnibus I 이후 CSDDD는 초기의 '공급망 전체 통제 모델'에서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ESG의 후퇴라기보다 '더 적게 수집하되, 더 정확하게 위험을 식별하고, 그 판단 과정을 입증하라'는 방향으로의 재설계에 가깝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망 실사의 경쟁력은 '더 많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위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그 판단을 설명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

환경

기후 변화 대응

녹색금융

친환경 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시장 재편...옥석 가리기 본격화

한경ESG | 2026-05-0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16809G>

EU 산림벌채법 조정 착수...가죽 빠지고 품목 재편

임팩트온 | 2026-05-06 |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754>

1분기→4월→5월로...ESG 공시' 왜 늦어지나

MTN 머니투데이 | 2026-05-08 | https://v.daum.net/v/1DbHgZKpWg?utm_source=chatgpt.com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무법인 세종 | 2026-05-18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283>

'그린 워싱' 논란, AI가 사전에 경고한다...SK AX, ESG 리스크 잡는 AI 출시

조선일보 | 2026-05-20 |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5/20/E-HYGB35WQFGIZOVRRCOBKQADF4/

[전문가 기고]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탄소중립을 이루어내기 위한 생존방안

아주경제 | 2026-05-21 | <https://www.ajunews.com/view/20260520000924324>

중동 의존 벗어날 에너지 대전환 서둘러야

중앙일보 | 2026-05-21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0106>

S

사회

산업 안전

노동권

동반 성장

소비자 보호

양형위, 중처법 양형기준 마련...5년 내 재범시 가중처벌

중앙일보 | 2026-05-11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7394>

반도체 초호황이 제기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험대

임팩트온 | 2026-05-15 |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902>

[ESG NOW] 공급망 인권 관리·노란봉투법, 충돌이 아닌 설계의 문제

아이뉴스24 | 2026-05-18 | <https://www.inews24.com/view/1969207>

美 국무부 차관보, '강제 노동' 실태 들으며 한국 온다

조선비즈 | 2026-05-19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05/19/HZU23QVM45E25JBIZYVQAMHMY/

인권위, 기업 인권실사법에 '조속한 심의 촉구' 의견 표명하기로

뉴스1 | 2026-05-21 |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174535>

최근 3년간 '산재 과로사' 663명...사업주 형사처벌 0건

한겨레 | 2026-05-24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60142.html>

G

지배구조

투명 경영

주주 가치

글로벌 규제 대응

공정거래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6년...기업가치 효과는 제자리"

한경ESG | 2026-05-02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03604G>

ESG 관점에서 삼성전자 파업을 보는 눈

임팩트온 | 2026-05-15 |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902>

인권위, "화성 외국인 노동자 '에어컨 분사 사건' 심각한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중앙일보 | 2026-05-24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0088>

금융위원장 "기업가치 제고 공시, 경영의 나침반 돼야"

연합뉴스 | 2026-05-27 |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7068000008>

밸류업 공시 기업, 수익률 45%p 더 높았다..."단계적 의무화 필요"

뉴스1 | 2026-05-27 |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stock/6178943>

이덕원 금융위원장 "밸류업 공시, 기업 경영 나침반 돼야"

매일경제 | 2026-05-28 | <https://www.mk.co.kr/news/stock/12059568>

중복상장 모회사 주주 ... 자회사 상장안 첫 승인

매일경제 | 2026-05-29 | <https://www.mk.co.kr/news/stock/12061445>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개)

구 분	'25.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6. 4월
녹색채권	314	317	328	328	326	319	318	321
사회적채권	1,769	1,763	1,772	1,799	1,811	1,815	1,809	1,818
지속가능채권	217	215	208	202	199	191	185	180

자료: KRX ESG채권 정보플랫폼-통계-상장현황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천억 원)

구 분	'25.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6. 4월
녹색채권	267	269	282	285	282	272	274	272
사회적채권	2,108	2,077	2,085	2,102	2,108	2,104	2,089	2,081
지속가능채권	158	159	159	151	149	144	138	135

자료: KRX ESG채권 정보플랫폼-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5.12.31)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	38	78	131	161	204	226	1

자료: KRX ESG 포털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5.12.31)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배구조보고서	213	224	231	355	380	530	549	44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5.12)

* CF100 참여 기업 수:
177개 ('25.9)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내	-	6	14	27	36	36	36	36
글로벌	204	269	335	393	426	439	446	443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담당자 및 문의처

최영준 연구원 | E. cyj@korcham.net

*지속가능경영원